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등록등 취소 기준 완화에 따른 정비(안 [별표 6]제2호사목·바목)

-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단체의 등록등 취소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법률로 상항됨에 따라 시행령의 규정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8])

- 1) 「과태료금액 지침」의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최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30 % 이상으로 상향 조정
- 2) 결함사실 미공개, 시정결과 보고나 신고의 지연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미공개, 보고 또는 신고의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부과금액 차등 설정
- 3) 계량기 결함사실 거짓 공개, 계량기 최대허용오차 거짓 표시 등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위반차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바목 위반행위란 바목 중 “법 제10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 각 호”로 하고, 같은 호를 삭제한다.

별표 28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60	120	200
다. 법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60 120 200	
라. 법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	법 제76조제2항제3호		60	

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			120	
			200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	60	120	2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 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5호		60 120 200	
사.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	60	120	200
아.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 하지 아니한 경우 가)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공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거짓 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150 300 500 500	
자. 법 제22조제4항 및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7호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20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계량 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8호	60	120	200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	60	120	200
타. 법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 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150	300	500
파. 법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 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 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 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 우	법 제76조제2항제10호	60	120	200
하.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 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 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1호	60	120	200
1)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60	120	200
2) 최대허용오차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0	
거.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2호	60	120	200
너. 법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3호	60	120	200

더.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1호 본문 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4호	150	300	500
러.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4호	60	120	200
머.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	60	120	200
버.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5호	150	300	500
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	150	300	500
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 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6호	60	120	200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7호	60	120	200
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8호	60	120	200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법 제76조제2항제19호	60	120	200
터.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0호	60	120	200
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1호	60	120	200
허.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 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2호		60 120 200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5. 18.>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해당법조문</th><th colspan="4">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시</th><th>2차 위반시</th><th>3차 위반시</th><th>4차 위반시</th></tr><tr><td>가. ~ 마. (생략)</td><td></td><td></td><td></td><td></td><td></td></tr><tr><td>바. 법 제10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td><td>법 제13조제1항제6호</td><td>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td><td></td><td></td><td></td></tr><tr><td>사. 법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td><td>법 제13조제1항제6호</td><td>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가. ~ 마. (생략)						바. 법 제10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 법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해당법조문</th><th colspan="4">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시</th><th>2차 위반시</th><th>3차 위반시</th><th>4차 위반시</th></tr><tr><td>가. ~ 마.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d></td></tr><tr><td>바.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td><td>법 제13조제1항제6호</td><td>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가. ~ 마. (생략)																																																			
바. 법 제10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 법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등록·지정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0	20	50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10	20	50
다. 법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10	20	50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60	120	200
다. 법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60 120 200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라. 법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3호	10	10	10	60	120	200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	10	20	50	60	120	2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5호	10	10	10	60	120	200
사.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	10	20	50	60	120	200

아.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10	20	50	아.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 계량기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가) 공개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공개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공개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계량기의 결함 사실을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150 300 500 500
자. 법 제22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7호	10	20	50	자. 법 제22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7호	60 120 200

					우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8호	10	20	5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8호	60	120	200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	10	20	50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	60	120	200
타. 법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10	20	50	타. 법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150	300	500
파. 법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0호	10	20	50	파. 법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0호	60	120	200
하.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1호	10	20	50	하.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 1)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최대허용오차 등을 거짓으	법 제76조제2항제11호	60	120	200

					로 표시한 경우				
거.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2호	10	20	50	거.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2호	60	120	200
너. 법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3호	10	20	50	너. 법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3호	60	120	200
더.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4호	50	100	150	더.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4호	150	300	500
러.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4호	10	20	50	러.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4호	60	120	200
머.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	10	20	50	머.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	60	120	200

경우					경우				
버.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5호	10	20	50	버.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5호	150	300	500
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	10	20	50	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	150	300	500
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6호	10	20	50	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6호	60	120	200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7호	10	20	50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7호	60	120	200
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8호	10	20	50	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8호	60	120	200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9호	10	20	50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9호	60	120	200
터.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0호	10	20	50	터.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0호	60	120	200
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1호	10	20	50	퍼.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1호	60	120	200

<신 설>					허. 법 제63조제2 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 항제22호	
					1) 지연신고기간 이 1개월 미 만인 경우		60
					2) 지연신고기간 이 1개월 이 상 6개월 미 만인 경우		120
					3) 지연신고기간 이 6개월 이 상인 경우		200